##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92

발의연월일: 2020. 6. 19.

발 의 자: 임종성·송갑석·윤후덕

기동민・김진표・김종민

김철민 · 소병훈 · 민홍철

송옥주·조응천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, 여객시설 및 도로(이하 "대상시설")에 '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'(이하 "인증")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대상시설에 대한 인증실적이 미미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#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 항) 중 "제1항 및 제2항에"를 "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1항 및 제2항에"를 "제1항부터 제3항까 지에"로, "제3항에"를 "제4항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1항 및 제2항에"를 "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"로, "신청권자와"를 "신청과"로, "제3항에"를 "제4항에"로, "제4항의"를 "제5항의"로 한다.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.
- 1. 국가·지방자치단체
-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- 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
- 4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의2(교통수단 등 인증) ①	제17조의2(교통수단 등 인증) ①
· ② (생 략)	·②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	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대상
	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
	인증을 받아야 한다.
	1. 국가·지방자치단체
	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
	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
	<u>관</u>
	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
	<u>방공기업</u>
	4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
	투자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
	<u>사업시행자</u>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	<u>④</u> <u>제1항부터</u>
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과	제3항까지에
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	
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	
	<b>.</b>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	<u>⑤</u>
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	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

증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장
관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.
<u>⑤</u> <u>제1항 및 제2항에</u> 따른 인
증의 <u>신청권자와</u> 인증 기준·절
차 및 취소, <u>제3항에</u> 따른 인증
기관의 지정, 그 밖에 인증제도
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
교통부령( <u>제4항의</u> 경우 보건복
지부와의 공동부령)으로 정한
다.

따른 인증 및 <u>제3항에</u> 따른 인

<u>제4항에</u>
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
<u>신청과</u>
<u>제4항에</u>
<u>제5항의</u>